

재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3. 11. 01

개정 2016. 04. 01

개정 2020. 10. 13

개정 2022. 06.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관 제4조① 1항, 4항 및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8조 2항에 따라 재심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치 목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심의) ① 인증평가 대학이 인증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경우 원장은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재심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사 및 비수의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인증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50% 이상으로 한다.

④ 재심의 내용은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평가서와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⑤ 위원회가 심의한 평가 결과는 최종 인증 결과가 된다.

제3조(임기)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1항에 따라 해당 재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3항에 따른다.

제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4항에 따라 인증평가과정의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평가서와 재심요구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단 및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재심의 신청 대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참고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5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는 최종 인증결과가 되며, 재심위원장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재심의 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대학이 신청서 제출과 함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관례의 준용)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6월 03일부터 적용한다.